

외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

제정 : 1999. 3. 30.

1차 개정 : 2023. 2. 16.

제1장 총 칙

제 1 조 【목적】 이 유치원규칙은 유아교육법 제 10조와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거 외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【명칭】 본 학칙은 외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명한다.

제 3 조 【위치】 본 유치원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포천로 2199에 위치한다.

제 2 장 수업연한 · 학기 및 휴업일

제 4 조 【교육연한】 본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하되, 만5세는 1년, 만4세는 2년, 만 3세는 3년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, 유치원의 학년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까지로 한다.

제 5 조 【학기】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,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·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(이하"원장"이라 한다)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,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 6 조 【휴업일】 ① 본 유치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토요일, 관공서의 공휴일, 국가에서 정한 휴일
2. 방학(여름 · 겨울)과 학년말 방학
3. 개원기념일(외북초등학교 개교기념일에 준함)
4. 원장 재량휴업일(외북초등학교 재량휴업일에 준함)

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9조의 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(이하 "유치원운영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며, 토요일,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 · 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.

- ③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⑤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유치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,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.

제 3 장 학급편제 및 원아정원

- 제 7 조 【학급편제】** ① 본 유치원의 학급 수는 유아수의 증감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편성 운영 한다.
- ② 본원은 한 학급 혼합연령으로 편성하고 인가 학급 범위 내에서 방과후과정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.
- 제 8 조 【원아정원】** ① 본원의 유아 정원은 18명으로 운영한다. 연령별 학급편성 및 유아정원은 당해 연도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학급 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.
- ② 본원의 방과후과정반 학급편성 및 정원은 제1항을 준용한다.
- ③ 학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결원을 보충한다.

제 4 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

- 제 9 조 【교육과정 및 교육내용】** ① 본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경기교육의 기본 가치를 반영한 창의지성교육이 구현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 한다.
- ~~② 경기도 유치원 교육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한다.~~
- ~~③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,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도록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한다.~~
- ~~④ 만3~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국가수준(누리과정)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한다.~~
- ~~⑤ 신체운동·건강, 의사소통, 사회관계, 예술경험,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한다.~~
- ① 본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 있고 창의적인 외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한다.
- ② 교육내용은 유치원의 상황,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수준별 내용간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.

- ③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유아들이 가지는 신체,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하루의 교육활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배려하며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 및 돌봄 활동을 병행하여 운영한다.

제 5 장 교육일수 및 교육시간

제 10 조 【교육일수】 ① 주 5일 수업으로 연간 수업 일수는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,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,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에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10분의 1의 범위에서 교육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,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【교육시간】 ① 본 유치원의 1일 수업운영은 1일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이며, 교육과정 이후에는 방과후과정을 운영한다.

② 본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1일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 5시간이내로 유치원의 실정, 유아의 적응 상태, 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, 계절, 학부모의 요구, 지역의 특수성 등 유치원의 제반 연건을 고려하여 유치원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.

③ 방과 후의 1일 교육시간은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되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.(**개별 보호자 동의하에 1시간 이내 조정가능**)

제12조 【수업연구】 ① 교사는 질 높은 수업이 되도록 부단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.

② 교사는 일일교육활동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수업에 임하여야 하며, 본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하여 수업을 운영한다.

제12조 【수업운영 방법】 ①본원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② 교사는 유치원교육과정의 기본방향, 편성, 운영 방법을 적용하여 수업한다.

③ 교사는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수업자료 및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다.

④ 교사는 누리과정을 이해하고, 유아중심 놀이중심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.

⑤ 유치원장은 감염병 상황으로 전체 등원수업이 곤란한 경우 유아발달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원격수업의 방법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13조 【수업장학】

① 원장과 원감은 교사들의 교수-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수업장학을 실시한다.

② 원장과 원감은 교내 순서를 통하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조언을 하고, 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.

제13조 【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】 ① 출석인정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.

단,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“심각·경계”단계인 경우 인정일수는 상이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부나 교육청 인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.

②‘연간 출석 인정 일수’및‘사전 허가된 기간’ 초과 시 ‘미인정 결석’처리한다.

- ③ 신청서와 보고서 등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보관한다.
- ④ 체험학습허가불허사항 - 교외체험학습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, 유치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유치원 밖 활동
- ⑤ 체험학습 형태 - 가족동반 여행, 친인척 방문, 답사·견학 활동, 체험활동, 감염병“심각·경계” 단계 시 가정학습
- ⑥ 신청서는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실시하며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.

제14조 【건강검진 및 급식】 ①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,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② 유치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한다.

제15조 【원아평가】 ① 원아평가는 원아의 발달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되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평가에 역점을 둔다.

② 원아 평가는 학기 초에 평가의 영역, 평가의 방법, 평가도구의 제작, 평가의 시기 등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.

③ 평가 결과는 원아 개개인의 성장발달을 돕고, 학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.

~~④ 1년에 2회(1,2학기말) ‘나의 유치원 생활’을 통해 기정으로 발송하여 원아의 바른 성장을 돕는다.~~

제16조 【생활기록부 작성·보관】 ① 법 제14조에 의거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.

②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·평가하여 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·관리한다.

제 6 장 입학 · 중도입학 · 퇴학 · 수료 및 졸업

제 17 조 【입학 자격 및 선발 기준】 ① 본 유치원의 입학 가능한 연령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하며 학급편제 기준에 준한다.

② 재입학은 만 3, 4세 경우 우선 입학할 수 있다.

③ 입학하려는 원아의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.

④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기타 원아모집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내규로 정한다.

제 18 조 【중도입학】 본 유치원의 중도 입학 시기는 유치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수시로 할 수 있다.(단 정원초과 시 입학 불가)

제 19 조 【퇴학】 ① 본 유치원에서 퇴학하려는 자는 퇴학원서를 보호자 연명으로 작성하여 유치원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원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.

1.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구할 때

- 2. 수업료 징수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
- 3.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다른 원아의 교육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

제 20 조 【수료 및 졸업】 ① 본 유치원의 원장은 원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원아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.

- 1. 수료대상 : 만 3세, 만 4세
- 2. 졸업대상 : 만 5세

② 원장은 본 유치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유치원 소정 양식에 의한 수료증서 및 졸업증서를 수여한다.

제 7 장 수업료 ·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

제 21 조 【수업료 및 입학금】 경기도 교육청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에 따라 공립 유치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.

제 22 조 【기타의 비용 징수】 본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타의 비용 징수에 관한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징수하며 징수방법 및 절차 등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.

제 8 장 교직원 관리 규정

제 23 조 【교직원 복무 관리】 본 유치원의 교직원 복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.

제 9 장 유치원 규칙 개정 절차

제 24 조 【유치원규칙 개정절차】 ① 규칙은 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 이를 확정 . 시행한다.

~~② 제1항의 규칙개정은 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~~

~~③ 제안된 규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.~~

제 25 조 【시행규칙】

기타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행세칙) 본 규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정한다.